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환매조건부채권(RP) 핵심(요약)설명서

[핵심(요약)설명서]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특징	수익률형태
퇴직연금 RP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	약정금리형
발행어음	발행어음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어음	약정금리형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발생 가능한 불이익

- 본 상품은 한국투자증권과 담보 채권이 모두 지급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만기 이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되오니 가입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 중도해지 적용금리 참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투자위험등급: 6 등급(매우낮은위험)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위험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유동성위험		중도매도(환매)불가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매도(환매)가능 [○]	

투자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 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를 통해 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임을 고려하여 6 등급(매우낮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DB 제도: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RP로 자동 재예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됩니다.
- DC.IRP 제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 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민원, 상담 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퇴직연금 고객센터(1588-8844),

인터넷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 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 (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설명서

□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투자자에게 약정된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
 2. 상품투자위험등급(투자성향): 6 등급(매우낮은위험)
 3. 약정기간: 1~60 개월 중 매월 공시기준에 따른 기간(약정일자)^{주1)}으로 가입 가능
 4. 가입금액: 1 원 이상 원단위
 5. 중도해지 및 인출: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인출 가능
 6. 만기처리방법:
 - DB 제도: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RP로 자동 재예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됩니다.
 - DC.IRP 제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 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자산^{주2)}으로 운용됩니다.
-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DC.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만기 자금 등을 운용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자는 기준 상품 만기 후 4주가 지난 시점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설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7. 과세: '퇴직연금 RP'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
 8.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매매기준시간: 영업일 08:00~17:00

□ 적용금리

본 상품은 상품 매수결제일에 '당사 홈페이지 > 연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알아보기> 퇴직연금 사업자공시> 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에 공시된 RP 고시금리(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인출 시에는 아래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일부터 중도해지 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주 1) '당사 홈페이지>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 알아보기>퇴직연금 사업자공시>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에 공시된 RP 만기

주 2) 현금성자산 '당사 홈페이지>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 알아보기>공지사항'에서 금리 및 편입자산 확인 가능

- 일반중도해지: 약정금리에서 1%p 를 차감한 금리 적용
(약정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일반중도해지 시 0.01% 적용)
- 특별중도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 사유 등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약정금리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 ① 퇴직[사간전입, 회사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퇴직 포함]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 ③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④ 사용자의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및 제도전환으로 인한 경우
- ⑤ 퇴직연금 사업자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제도를 이전하는 경우
- ⑥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임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우
- ⑦ 연금지급 및 연금지급 신청을 위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 ⑧ 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등)이어서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 ⑨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중도해지 경우
- ⑩ 사업장의 폐업 및 파산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⑪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본 상품은 상품 매수결제일에 '당사 홈페이지 > 연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알아보기> 퇴직연금 사업자공시> 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에 공시된 RP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규, 추가입금 및 만기 재예치의 경우 금리 변경에 대한 별도 통보 없이 상품 매수결제일에 공시된 RP 고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지급 됩니다.

※ 아래 내용은 고객님께서 교부 받으신 설명서에 추가되는 내용이오니 설명을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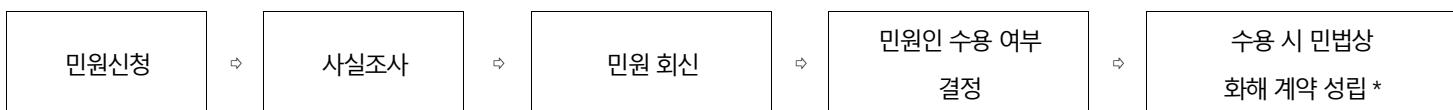
행사요건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대상상품	1. 투자성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단위형),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2. 대출성상품: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청약철회 행사방법	[투자성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숙려기간 2일 포함 시 9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께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계약/청약한 금액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성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은 대출원금과 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지대(인지세의 50%)등을 반환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반대매매 등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내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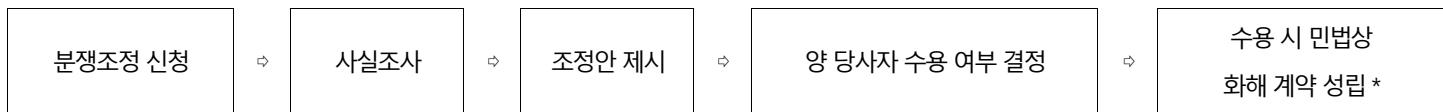
■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협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 판매직원 확인 사항

판매직원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 _____) 직위: _____ 직원명 : _____ (서명)